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47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송재봉 · 김남근 · 임호선
김문수 · 강준현 · 이재관
이주희 · 이광희 · 이훈기
김우영 · 남인순 · 이수진
이용선 · 박정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에 한정하여 구조와 성능 등이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의 적합성,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의 부착 의무와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인 픽시(Fixie)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례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일반 자전거 역시 구조·장치 측면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전거의 개조 및 운행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전거의 요건에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전기자전거에 한정된 안전요건 적합성, 불법 개조 금지 및 불법 개조된 자전거의 운행 금지 규정을 모든 자전거로 확대하며,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0조의2 및 제21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크기와 구조”를 “크기, 구조 및 장치”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자전거는 구조와”를 “자전거는 크기, 구조, 장치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교통안전교육 등”을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 -----크기, 구조 및 장치----- --.
1의2. ~ 4. (생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u>전기자전거</u> 의 안전요건 등) ① <u>전기자전거</u> 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u>전기자전거</u> 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u>전기자전거</u> 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	제20조의2(<u>자전거</u> 의 안전요건 등) ① <u>자전거</u> 는 크기, 구조, 장치와----- -----. ② ----- <u>자전거</u> ----- -----. ③ ----- <u>자전거</u> ----- -----

니 된다.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생 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 전거 이용과 관련한 <u>교통안전 교육</u>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 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u>----- -.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u> 5. (현행 제4호와 같음)
--	--